

소프트웨어학과 학생회칙

(2022년 9월 신설)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

- 본회는 '한국항공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학생회'라 한다. (이하 명칭 '본회'라 한다.)

제2조 (목적)

- 본회는 본회 회원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이의 실현을 통한 합일과 단결을 이루어 나간다. 이를 통해 학원의 완전한 자주성을 축적하며 자주적이고 민중적인 항공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.

제3조 (설치)

- 본회는 한국항공대학교 안에 둔다.

제4조 (회원)

- 1항: 입학·편입학·소속변경 등으로 한국항공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자는 본회의 회원이 된다.
- 2항: 졸업·자퇴·퇴학 등으로 한국항공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학사과정에 재적 중이 아니게 된 자는 그 즉시 회원 자격을 잃으며, 정학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정지된 자는 그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.
- 3항: 재학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정회원이 된다. 단, 학기 중 휴학한 자는 그 즉시 정회원 자격을 잃는다.
 - 1) 1학기 재학생 :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
 - 2) 2학기 재학생 : 2학기 개강일부터 이듬해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
- 4항: 휴학생은 준회원이 되며, 제5조에 열거된 권리와 의무 중 제1항, 제6항, 제7항을 제외한 나머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.
- 5항: 준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등록기간에 등록절차를 이행한 자는 등록 이후부터 그 다음 등록기간 전까지 정회원이 된다.

- 1) 1학기 정회원 등록기간 : 1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
- 2) 2학기 정회원 등록기간 : 2학기 개강일부터 이듬해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
- 6항: 학생회 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당선 공고일까지는 정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.
- 7항: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,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학과총회 의결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.

제5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- 1항: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
- 2항: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본회의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
- 3항: 회원은 각 기구를 방청할 수 있으며, 의장의 동의 하에 각 기구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 단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, 회의장 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- 4항: 회원은 언론·출판·집회·결사의 자유를 갖는다.
- 5항: 본회와 본회의 각 기구는 본조에 열거된 회원의 권리가 내·외부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여야 하며, 회원의 권리가 침해될 때 이를 수호할 적극적 의무를 지닌다.
- 6항: 회원은 본회의 회칙과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.
- 7항: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권리를 지닌다.

제6조 (구성)

- 1항: 본회는 학과총회, 학생회장, 부회장, 집행위원회로 구성된다.
- 2항: 추천되지 아니한 자가 추천이 필요한 직위를 가질 수 없다.

제7조 (대표자의 책임)

- 학생회장 및 부회장, 집행위원회는 이 회의 대표자로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각 기구의 협력을 통해 그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.

제8조 (겸직 금지)

- 1항: 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.

- 1)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
 - 2) 각 학(부)과의 학생회장과 부회장
 - 3) 동아리연합회 회장, 부회장
 - 4) 총여학생회 회장, 부회장
 - 5) 학생복지회 회장, 부회장
 - 6) 그 밖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회원 자격이 부여되는 직책
- 2항: 제1항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갖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갖게 된 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에서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.

제9조 (학교당국과의 관계)

- 1항: 본회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·자율적 지위를 갖는다.
- 2항: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과의 협의 또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절차를 거쳐 학교당국과의 협의 및 협상을 할 수 있다.

제10조 (의결 및 운영)

- 1항: 의결 및 운영기구의 의사결정 권한은 학과총회, 학생회장의 순서로 그 권한을 가진다.
- 2항: 하위 의결기구와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을 우선한다.

제2장 학과총회

제11조 (지위 및 명칭)

- 1항: 학과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.
- 2항: 소프트웨어학과 학생총회를 의미한다.

제12조 (구성)

- 학과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.

제13조 (권한)

- 1항: 본회의 존립 및 회원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
- 2항: 본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토론·의결

- 3항: 과학생회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
- 4항: 예산·결산의 심의 및 승인
- 5항: 본회의 회계 및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

제14조 (의장)

- 1항: 학과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, 학생회장이 의장 역할을 맡지 못할 시에는 부회장이 맡는다.
- 2항: 학생회장과 부회장 모두 의장 역할을 맡지 못할 경우에는 학과총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.

제15조 (소집)

- 1항: 학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를 둔다.
- 2항: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실시하며, 1학기 또는 2학기 개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소집한다.
- 3항: 임시총회는 학생회 전체와 관계 있는 특별사항이 발생하여 학생회장이 발의하거나 회원 1/12 이상의 연서로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소집한다.
- 4항: 학과총회의 소집과 상정안건은 개최일 7일전에 의장이 공고한다.
- 5항: 학과총회의 결과는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고하도록 한다.

제16조 (의결)

- 1항: 학과총회는 회원 1/1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2항: 학과총회 안건 의결 시 의결요건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구성원 수는 각 안건의 의결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.
- 3항: 학과총회의 성사 여부는 소집 공고에 명시된 개최 시간까지 출석한 회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.
- 4항: 의장은 총회 성사를 위해 개최 시간을 사전에 공고된 시간보다 연장할 수 있으나, 그 시간은 1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5항: 학과총회의 의결권은 구성원이 평등하게 가지며, 직접 출석하여 행사하여야 한다.
- 6항: 성원미달 혹은 기타사유에 의해 중도에 총회가 파기되는 경우, 해당안건은 전 회원 수의 1/12이상의 직접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장 학생회장 및 부회장

제17조 (지위)

- 1항: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학과총회,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- 2항: 부회장은 학생회장의 지위와 역할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궐위 시 그 권한과 역할을 계승한다. 다만, 학생회장의 궐위 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기간 동안 그 권한과 역할을 대행한다.

제18조 (업무 및 권한)

- 1항: 학생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권한을 행한다.
 - 1) 학과총회, 집행위원회 소집과 주관
 - 2) 본회 사무의 집행 총괄
 - 3) 집행위원회 및 산하기구의 구성권과 임명 및 해임권
 - 4) 집행위원회의 결정·집행 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
- 2항: 학생회장은 필요성이 인정된 사안의 효율적 업무 집행을 위하여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. 직속 위원회와 위원장 및 위원에 관하여서는 1항의 3 호부터 4호까지를 준용한다.
- 3항: 학생회장은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학교 행정의 문제에 대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고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하며, 필요할 때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.
- 4항: 학생회장은 본회와 본회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본회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며, 본회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한다.

제19조 (의무)

- 1항: 학생회장은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2항: 학생회장은 본회의 대표로서 학과총회에 본회의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
- 3항: 학생회장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4항: 학생회장은 본회와 본회 산하기구의 각종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5항: 학생회장은 후임 학생회장의 선출과 후임 학생회장으로의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 후임 학생회장의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
제20조 (임기)

- 학생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.

제20-1조 (인수인계)

- 1항: 소프트웨어학과 학생회 선거를 통해 소프트웨어학과 학생회가 구성되었을 경우(당선자), 전임 소프트웨어학과 학생회는 신임 소프트웨어학과 학생회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인수인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.
- 2항: 인계자는 인수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, 13장에 해당되는 예산에 대한 회계자료 일체를 제공해야 한다.
- 3항: 인계자는 소프트웨어학과 학생회에서 보유한 공용비품에 대한 내역을 제공하여야 하며, 비품에 대한 손망실 처리는 인계자와 인수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- 4항: 인수인계 과정의 투명하고 성실한 집행을 위해 인계자와 인수자 간의 '인수인계 확인서'를 작성하여 인수인계 내용을 기록하고, 양자가 인수인계 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인수인계 종료를 확정한다.
- 5항: 인수인계 필수 자료로서는 임기까지의 결산안 및 영수증, 학생회 회의록, 학과총회 회의록, 제휴업체 계약서, 공문 양식자료, 학생회 행사 기획 및 진행 자료가 있으며, 보관하여 인수인계 하며 추가적인 자료에 관해서는 인계자와 인수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
제21조 (탄핵)

- 1항: 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, 대외적으로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학생회장과 부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.
- 2항: 학생회장 또는 부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.
 - 1) 회원 전체 1/1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요구
- 3항: 발의된 탄핵안은 학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의결되어야 한다.
- 4항: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중 임시의장을 선출해 탄핵안 발의 5일 이내에 학과총회를 소집한다.
- 5항: 학과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탄핵안을 심의한다.
- 6항: 재적 회원 2/3 이상의 출석과, 출석 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학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다.
- 7항: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, 그 시점부터 학생회장의 권한과 의무는 정지되며, 부회장이 이를 승계하여 대리한다.
- 8항: 학생회장과 부회장 양자에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, 전학대회 출석 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권한대행자를 선출한다.
- 9항: 학과총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기타 그 밖의 사유로 탄핵안이 철회되면 그 시점부터 권한과 의무를 회복한다.

- 10항: 학과총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거나 기타 그 밖의 사유로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동반 결위 시, 8항에 의한 권한대행자가 이를 승계하여 대리한다.

제4장 집행위원회 및 소프트웨어학과 학생회

제1절 집행위원회

제22조 (지위)

-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.

제23조 (구성)

- 1항: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이 구성한다.
- 2항: 집행위원회는 그 역할과 지위에 따라 각 부장, 차장, 부원으로 구성한다. 단, 내부 업무분장의 상세한 구성에 있어서는 학생회장이 결정한다.

제24조 (업무 및 권한)

- 1항: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권한을 행한다.
 - 1) 소프트웨어학과 학생회 업무전반에 대한 집행의 최고권한
 - 2) 본회의 사업 집행 전반 담당
 - 3) 학과총회, 집행위원회가 의결한 업무 집행
- 2항: 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하여 각 학(부)과 학생회 및 등의 동종 업무 담당자 혹은 이에 준하는 자가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제25조 (보고)

- 집행위원회는 학과총회에 본회의 운영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.

제2절 소프트웨어학과 학생회

제26조 (구성)

- 1항: 소프트웨어학과 학생회는 학생회장, 부회장, 집행위원회로 구성한다. (이하 명칭 '과학생회'라 한다.)
- 2항: 과학생회는 정회원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로 선출되는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를 뜻한다.

제5장 재정

제27조 (원칙)

- 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.

제28조 (재원)

- 본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교비지원금, 기타 수익금으로 집행한다.

제29조(재정의 관리)

- 학생회장은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편성 집행한다

제30조 (회계연도)

- 본회의 예산은 4분기로 구분하여 집행한다.
 - 1) 1분기 : 당선 직후부터 1학기 개강일 전날까지(12월~2월)
 - 2) 2분기 : 1학기 개강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(3월~6월)
 - 3) 3분기 : 1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2학기 개강일 전날까지(7월~8월)
 - 4) 4분기 : 2학기 개강일부터 임기 끝나는 날까지(9월~11월)

제31조(예산 편성 및 심의)

- 1항: 집행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학과총회에 제출한다.
- 2항: 집행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·조정한 후 학과총회에 상정해서 심의한 후 확정한다. 삭제
(3. 예산안이 학과총회에서 의결되지 못하여 학생회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집행위원회가 심의·확정한다.)

제32조 (가예산 및 경정예산)

- 1항: 집행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 심의·확정이 지연될 경우 1개월간의 합리적으로 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.
- 2항: 집행위원회는 심의·확정된 예산에 가감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, 추후 이를 학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3조 (결산)

- 1항: 소프트웨어학과 학생회 집행위원회의 결산 내용은 집행위원회에서 협의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.

- 2항: 모든 단체의 정기결산일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- 1) 1분기 결산 : 1학기 개강 주 이내
 - 2) 2분기 결산 : 6월 첫째 주 이내
 - 3) 3분기 결산 : 2학기 개강 주 이내
 - 4) 4분기 결산 : 12월 첫째 주 이내
- 4항: 결산보고는 학생회의 각 기구에서 보고된 것을 집행위원회에서 일괄 작성하여 전학대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.
- 5항: 결산 보고는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되어야 하며, 구체적인 결산의 방식은 소프트웨어학과 학생회 방식에 따른다.
- 6항: 단체는 결산의 각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
- 7항: 학생회장은 학과총회 종료 후 1주일 내에 결산보고를 대중적으로 공고한다.

제34조 (자산)

- 1항: 본회는 유·무형의 동산, 부동산, 권리 등을 소유할 수 있으며, 이를 본회의 자산이라 한다.
- 2항: 본회의 자산은 각 기구가 독립하여 취득, 보관, 사용,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3항: 집행위원회는 제작, 구매, 증여 받음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다.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집행위원회의 자산으로 본다.
 - 1) 취득 과정에서 이 회의 자산이 투입되어 취득한 것
 - 2) 학생회장단 혹은 이에 준하는 자가 그 직으로써 취득한 것
 - 3) 이 회 집행기구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, 사업 집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
- 4항: 산하기구와 특별기구의 자산에 관하여서는 본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산하기구와 특별기구의 자치규칙으로 정하거나, 각 산하기구와 특별기구의 의결기관이 결정한다.

제35조 (자산의 관리)

- 1항: 집행위원회는 자산을 항상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.
- 2항: 집행위원회 자산은 본회 사업과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- 3항: 집행위원회 자산은 대여를 목적으로 한 재산이거나 대여하여도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일 때만 대여할 수 있다. 또한 집행기구 자산은 이 회 기구와 회원·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대여되어야 한다.
- 4항: 집행기구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을 교환, 매각, 증여,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.
- 5항: 집행기구는 자산의 취득, 보관, 사용, 처분이 이 회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6항: 집행위원회는 집행기구의 자산 취득, 보관, 사용, 처분이 이 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, 적정성 또는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허가하지 않거나, 취소할 수 있다.

제36조 (감사)

- 본회의 감사는 제13조 5항에 의한다.

제6장 선거

제37조 (선거)

- 1항: 소프트웨어학과 학생회 선거는 정회원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로 선출한다.
- 2항: 소프트웨어학과 학생회 선거에는 학생회장 후보와 부회장 후보 각 한 명씩 이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.

제38조 (선거시기)

- 1항: 소프트웨어학과 학생회 선거는 11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세부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.
- 2항: 소프트웨어학과 학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일정이 확정되는 즉시, 늦어도 추천 시작일 7일 전까지는 선거일정을 공고해야 한다.

제39조 (선거권 및 피선거권)

- 본회의 모든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. 피선거권은 정회원 중 제34조의 조건과 선거시행세칙에 따른 조건을 갖추는 자로 한다.

제40조 (후보자 및 입후보자격)

- 1항: 본회의 목적에 충실한 자
- 2항: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

- 3항: 재학기간 중 학사징계(정학, 근신, 제적)를 받지 아니한 자. 단, 부당한 사유로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 2/3의 동의를 얻어 피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고, 본인의 약력 사항에 학사징계 사실과 그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.
- 4항: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.

제41조 (보궐선거)

- 1항: 학생회장, 부회장 궐위나 탄핵 시 그 잔여임기가 136일 이상일 경우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.

제7장 회칙개정

제42조 (발의)

- 1항: 회칙개정안은 각호의 규정된 사항에 따라 발의된다.
 - 1) 본회 회원의 1/12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
 - 2) 학생회장에 의한 발의
 - 3) 집행위원회에 의한 발의
 - 4) 집행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의 연서에 의한 발의
- 2항: 연서에 따른 발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)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
 - 2) 신·구문 대비표
 - 3) 연서자의 이름, 학(부)과, 학번
 - 4) 대표 발의인

제43조 (개정안 공고)

- 1항: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학과총회의 의장이 즉시 공고한다.
- 2항: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학과총회 의장은 지체 없이 학과총회를 소집하여 회칙 개정안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44조 (의결)

-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학과총회의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5조 (공포)

- 1항: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학과총회 의장이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.
- 2항: 회칙의 공포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)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
 - 2) 신·구조문 대비표
 - 3) 제42조 2항에 따른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
 - 4) 회칙 개정 찬성 회원 명단
- 3항: 본조는 세칙과 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에도 준용한다.

제46조 (효력)

- 개정된 회칙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)

- 본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

- 본 회칙에 의하여 선거방법이나 인원이 변경된 경우 본 회칙의 효력 발생 이전에 구성된 모든 기구의 임원은 그 임기 만료시까지 전 회칙에 의하여 그 효력을 발휘한다.

제3조 (관례)

-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 단, 이로 인하여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회의 의결방식에 따라 결정한다.
- 1항: 이 신설 회칙은 2022년 9월 29일 소프트웨어학과 학과총회를 통과 후 공표를 통해 정식효력을 가진다.
- 2항: 그 외의 사항은 관례로 한다.